



서울신용보증재단

수신자 내부결재(게시)

(경유)

제목 회의수당지급기준 개정 알림

「출자·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계획 알림」(서울시 공기업담당관-4855, '16.5.3)에 의거 다음과 같이 회의수당지급기준을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
1. 개정내용 (※세부내용 [붙임1] 참조)

- 가. 당연직이사의 이사회 참석수당 규정 정비 및 지급기준금액 상향조정
- 나. 강사료 및 원고료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지급기준을 준용

2. 시 행 일 : 2016. 6. 15

- 붙임 : 1. 회의수당지급기준 개정내용 및 신·구 조문 대비표 1부
2. 회의수당지급기준 개정 후 전문 1부. 끝.

주임

팀장

협조자

시행 재무팀-532 (2016.06.14.) 접수 ()
우 04130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17층 / <http://www.seoulshinbo.co.kr>
전화 02-2174-5122 /전송 02-3278-8115 / salee0916@seoulshinbo.co.kr / 공개